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36호

다. 제출일자 : 2014. 10. 30.

라. 회부일자 : 2014. 11. 6.

2. 제 안 사 유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주민번호 처리 법정주의)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14.8.7일 시행)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중 일정비율의 온실가스 절감 시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 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8.28 ~ 2014.9.17)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담당자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법」¹⁾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²⁾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수집된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분에게는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 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함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에코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관 계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재사용·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에 관한 사무
8.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